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86 발의연월일: 2025. 1. 21.

발 의 자:김미애·김상훈·김기현

강승규 · 곽규택 · 박상웅

이종배 · 안철수 · 이달희

최수진 • 박수민 • 주호영

유용원 · 김성원 · 최은석

배준영 • 인요한 • 송석준

진종오 • 우재준 • 임이자

김종양 • 박덕흠 • 김정재

조지연 • 박정하 의원

(26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목적으로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중국 SNS상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상세한 방법까지 공유하고 있는 실정임.

이른바 "건보 먹튀"로 인하여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인에 대한 건강 보험부과액은 8,103억원, 급여비는 8,743억원으로 약 640억원의 적자가 기록된 바 있음.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 로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하였음. 이와 반대로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건강보험 또한 국민연금과 같이 상호주 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5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체류 외국인의 경우 이 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외국인이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5		
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국내체류 외국인의 경우 이		
	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에 상		
	응하는 보험에 관하여 그 외		
	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외국인이 유학		
	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